

복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40호 2023. 3. 8. (수)

고 시

제2023-22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2
제2023-25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3

공 고

제2023-280호	부산광역시 복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
제2023-288호	2022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8
제2023-293호	부산광역시 복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5
제2023-299호	부산광역시 복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2

공 람											
--------	--	--	--	--	--	--	--	--	--	--	--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22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0번길 24 (덕천동)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0건)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0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금곡대로20번길 24	2023-03-08	건축물대장 말소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25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60번길 36 (만덕동)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0건)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0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구만덕로60번길 36	2023-03-06	건축물대장 말소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2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 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착한가격업소(영업자)의 협조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46504)
- 2) 연락처 : ☎ 051-309-4485, FAX 051-309-4489, E-mail: gyuli0319@korea.kr

※ 이 조례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산광역시 복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복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2022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 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재난관리실태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부산광역시 복구청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2년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덕천근린공원 인접 사면 낙석 및 토사 유출되어 시 특별조정교부금 400백만원을 교부받아 재해복구 진행 중입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6종으로 39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 5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와 변동 없습니다.
 - 방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교육 참석 인원은 58명입니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은 2,45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년 평균보다 706명이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15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정비로 45개 사업에 6,43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보다 2,450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18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관리자원인 방재물자로
 - 제설기 1대, 자동염수살포장치 1대, 제설제살포기 19대,
제설제 250포(25kg), 제설제 66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 의료시설은 369개소로 5년 평균보다 8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9개소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등 수용시설은 31개소 수용인원은 6,002명으로 5년 평균보다 8개소 114명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9개소 증가하였으나 수용인원은 33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재난 장비는 구조장비, 복구장비, 산불진화장비, 기타장비로 구분하여 총 3,283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민방위기술지원대는 79명, 자원봉사단체 활동인원은 2,615명으로 모두 5년 평균보다 19명, 500명 감소하였고 지난해 보다 19명, 460명 감소하였습니다.
- 2022년 코로나위기관리 평가에서 대상, 하수시설 유지관리 장려,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우수 등 재난관련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기존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추진으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47개 중 32개소의 내진성능 확보(내진설계적용15, 보강불필요14, 보강완료3)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8%의 내진율을 확보하였으며, 교량은 35개소 중 7개가 내진보강되어 지난해보다 6% 상승한 43%의 내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인 40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직전 5개년 평균 보다 60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는 3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으로 92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비로 주로 사용하였으며, 큰 피해를 발생한 자연재해가 없어 사용액은 작년 대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총 31개 재난분야별로 작성·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 C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2020년 D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반적인 추진실적을 볼 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소재지	피해내용	추진사항	비고
2022.09.06.(화) 07:28	덕천동 472번지 (덕천근린공원 인접 사면)	태풍 힌남노 내습 시 균열된 암석 틈에 우수 침투로 낙석 및 토사 유출로 붕괴	시비 400백만원 확보하여 계단식 옹벽L=37.5m, 사면안전공(영구앵커 16공, 쏘일네일링 26공) 공사 진행 중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 구



나. 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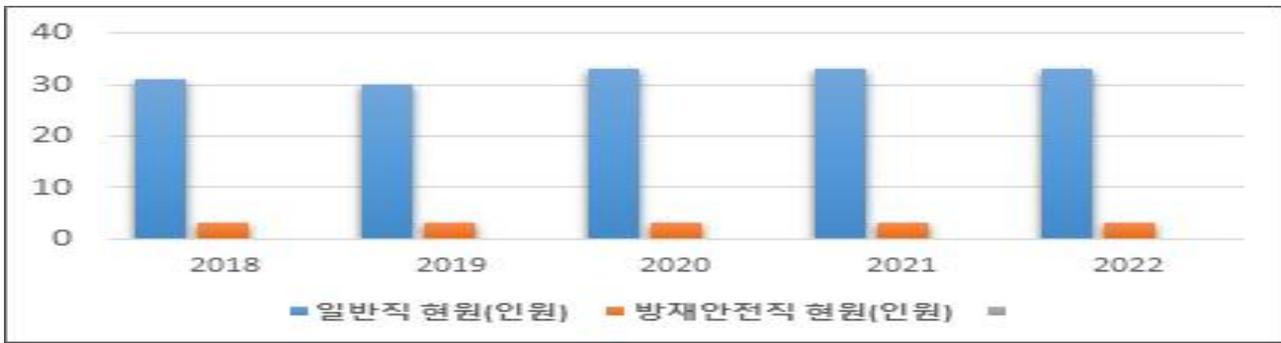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33	33	1	1	10	8	11	2	공무직1
	현원	33	33	1	1	13	6	7	5	공무직1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4	4			1		2	1
	현원	3	3				1	1	1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직 현원(인원)	31	30	33	33	33
* 방재안전직 포함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3	3	3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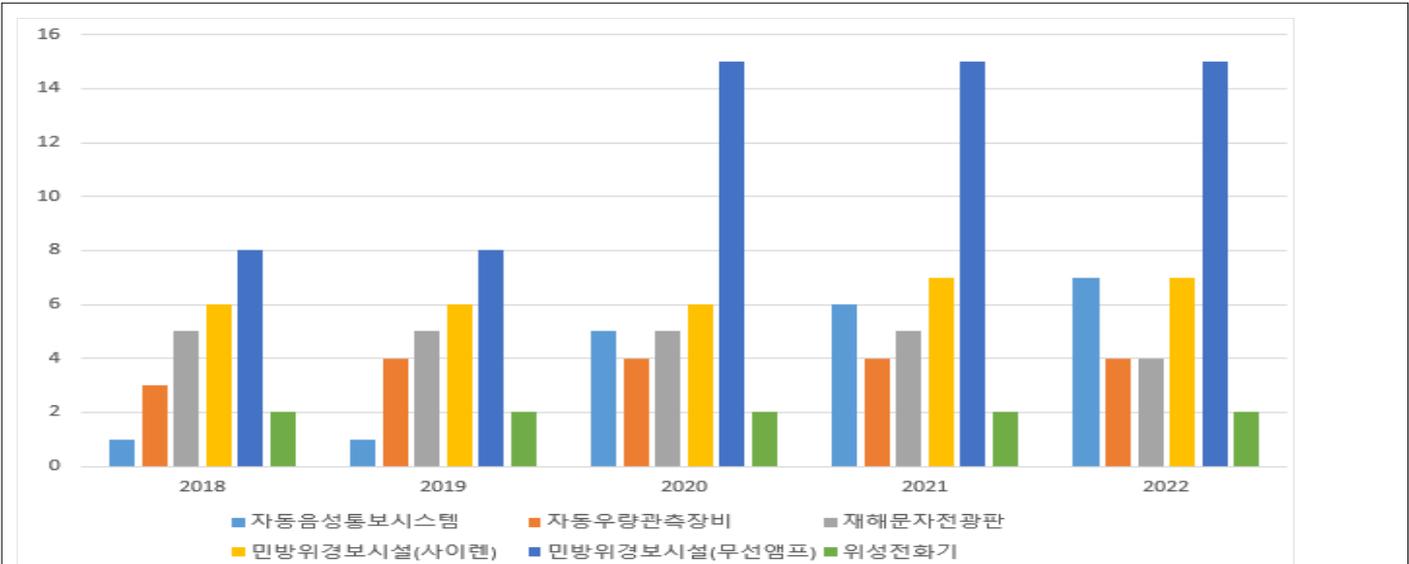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	대천천 입구, 구포2·구포3·금곡·화명2·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감동진문화포구
자동우량관측장비 (강우량측정시스템)	4	북구보건소, 북구청 별관(市 관리), 만덕2동, 화명수목원 관리소
재해문자전광판	5	덕천로타리, 화명생태공원입구, 구포1, 화명2, 덕천3 행정복지센터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7	구포2동사, 금곡중, 명덕초, 화신중, 양천초, 백양중, 덕천2동사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15	-
위성전화기	2	북구청 재무과(통신팀)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1	5	6	7
자동우량관측장비	3	4	4	4	4
재해문자전광판	5	5	5	5	5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6	6	7	7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8	8	15	15	15
위성전화기	2	2	2	2	2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장비시설 전년대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1개 증가하였음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매뉴얼과정 (지하철 고속철도 대형사고)	2022.01.24.~ 2022.01.25.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2.01.26.~ 2022.01.28.	"	1명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정	2022.02.07.~ 2022.02.08.	"	1명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2.02.09.~ 2022.02.11.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3명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 및 재난대응과정	2022.03.11.~ 2022.03.13.	"	1명	
사회재난복구제도의 이해과정	2022.03.11.~ 2022.03.16.	"	1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과정	2022.03.12.~ 2022.03.16.	"	1명	
사회재난관리과정	2022.03.15.~ 2022.03.17.	"	1명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2.03.16.~ 2022.03.18.	"	2명	
재난현장 드론 활용과정	2022.03.21.~ 2022.03.22.	"	2명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2.03.30.~ 2022.04.01.	"	1명	
재난안전 힐링과정	2022.04.06.~ 2022.04.07.	"	2명	
재난안전 관리자과정	2022.04.08.	"	3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과정	2022.04.16.~ 2022.04.20.	"	1명	
재난안전과 리더십과정	2022.04.16.~ 2022.04.22.	"	1명	
사회재난 복구제도의 이해	2022.04.22. ~2022.4.30.	"	1명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과정	2022.05.06.~ 2022.05.10.	"	1명	
재난과 협업과정	2022.05.06.~ 2022.05.15.	"	1명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2022.05.11.~ 2022.05.31.	"	1명	
자연재난대응과정	2022.05.23.~ 2022.05.24.	"	1명	
재난안전종사자의 임무와 역할과정	2022.05.23.~ 2022.05.25.	"	1명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2.05.25.~ 2022.05.27.	"	5명	
재난안전과 리더십과정	2022.05.24.~ 2022.05.26.	"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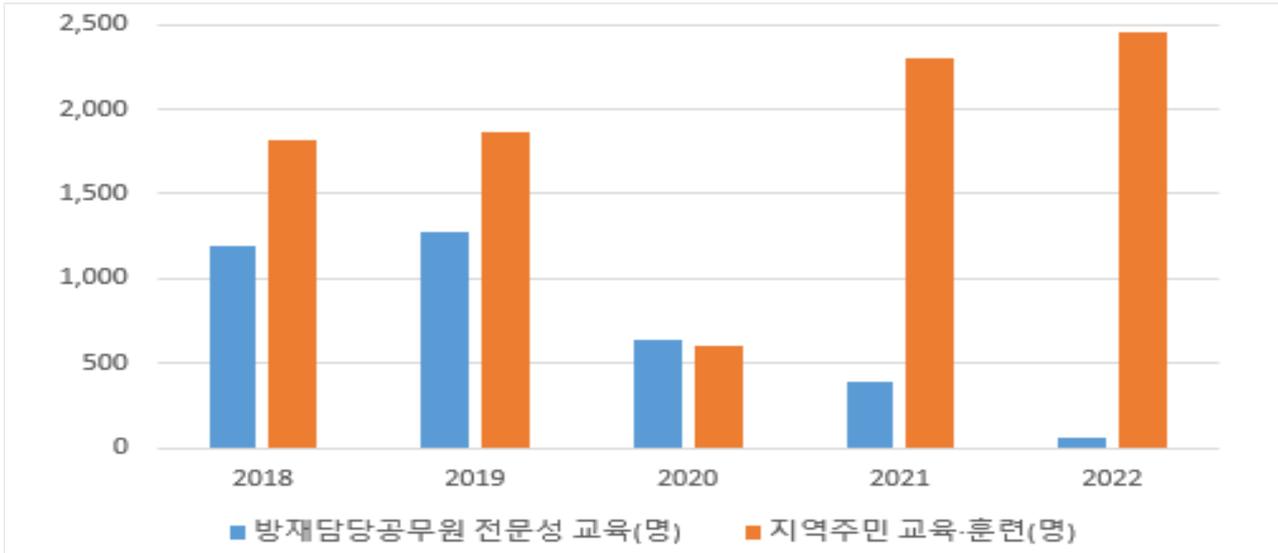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2022.05.24.~ 2022.05.26.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1명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과정	2022.05.24.~ 2022.05.26.	"	2명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2022.06.02.~ 2022.06.06.	"	1명	
재난구호과정	2022.06.02.~ 2022.06.06.	"	1명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2022.06.06.~ 2022.06.23.	"	1명	
재난대비훈련과정	2022.06.06.~ 2022.06.23.	"	1명	
재난안전통신망의 이해, 단말기 및 지령장치 사용방법	2022.06.06.~ 2022.06.24.	"	1명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2022.06.10.~ 2022.06.14.	"	1명	
재난구호과정	2022.06.10.~ 2022.06.14.	"	1명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2.08.17.~ 2022.08.19.	"	1명	
재난안전 관리자과정	2022.09.02.	"	2명	
승강기담당 직무역량과정	2022.09.14.~ 2022.09.15.	"	1명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2022.09.28.~ 2022.09.30.	"	1명	
기후재난대응과정	2022.10.05.~ 2022.10.06.	"	1명	
재난안전 신규관리자과정	2022.10.12.~ 2022.10.14.	"	2명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2.10.24.~ 2022.10.26.	"	1명	
소하천관리과정	2022.10.26.~ 2022.10.27.	"	1명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2.11.21.~ 2022.11.23.	"	3명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2.12.05.~ 2022.12.07.	"	1명	

나.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22.03.17.	만덕동백양산동 문굿모닝힐아파트 일원	25명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22.05.04.	화명생태공원 요트계류장 일원	116명	수방장비 가동훈련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22.06.03.	성도고등학교	33명	성도고등학교 뒤 승수로 정비 등	"	
물놀이 안전예방 교육	2022.06.20. 2022.07.08.	행락질서 안내소	22명	물놀이 안전수칙 등 교육	"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구호 천사」 양성교육	2022.07.04.	북구청 대회의실	62명	심폐소생술 실습 및 응급처치 등 실습교육	"	
2022년 북구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022.07.04. ~ 11.18.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기관	895명	화재(지진)대피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사용법 교육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22.08.05.	구포시장 롯데마트 덕천동뉴코아	100명	폭염예방 캠페인,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등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22.09.02. ~ 09.07.	관내 13개 동	100명	배수로 이물질 덮개 제거, 그늘막 및 승수로 점검 등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22.10.04.	신만덕교차로 시장 일원	20명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홍보	"	
골든타임을 지키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	2022.10.29. ~ 10.30.	화명생태공원	500명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	
화재(지진) 대피훈련	2022.11.17.	화명어린이집	80명	화재(지진)대피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사용법 교육	"	
화재(지진) 대피훈련	2022.11.18.	부산시각 장애인복지관	50명	화재(지진)대피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사용법 교육	"	
방사능 방재교육	2022.11.21.	북구청 대회의실	77명	방사능 비상 시 갑상샘 방호약품 배분 업무 수행자(통장) 교육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22.11.24.	구포 솔로몬로파크	200명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화재 대응 훈련	"	
2022년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결과보고	2022.11.24.	구포2동 일원	50명	2022년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	
화재(지진) 대피훈련	2022.11.25.	금정산 뉴월시티 어린이집	50명	화재(지진)대피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사용법 교육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22.11.08.	신만덕교차로 시장 일원	26명	PM 3단계 행동수칙 홍보 등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22.12.07.	화명동 일원	50명	인파사고 예방,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역량강화 교육	"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1,198	1,273	632	394	58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1,818	1,861	605	2,300	2,456



☞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교육 실적은 2021년까지 물놀이 대비 교육 인원 수치를 포함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안전총괄과 방재업무 담당 직원의 방재교육 수치만 집계하여 작성하여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하였음.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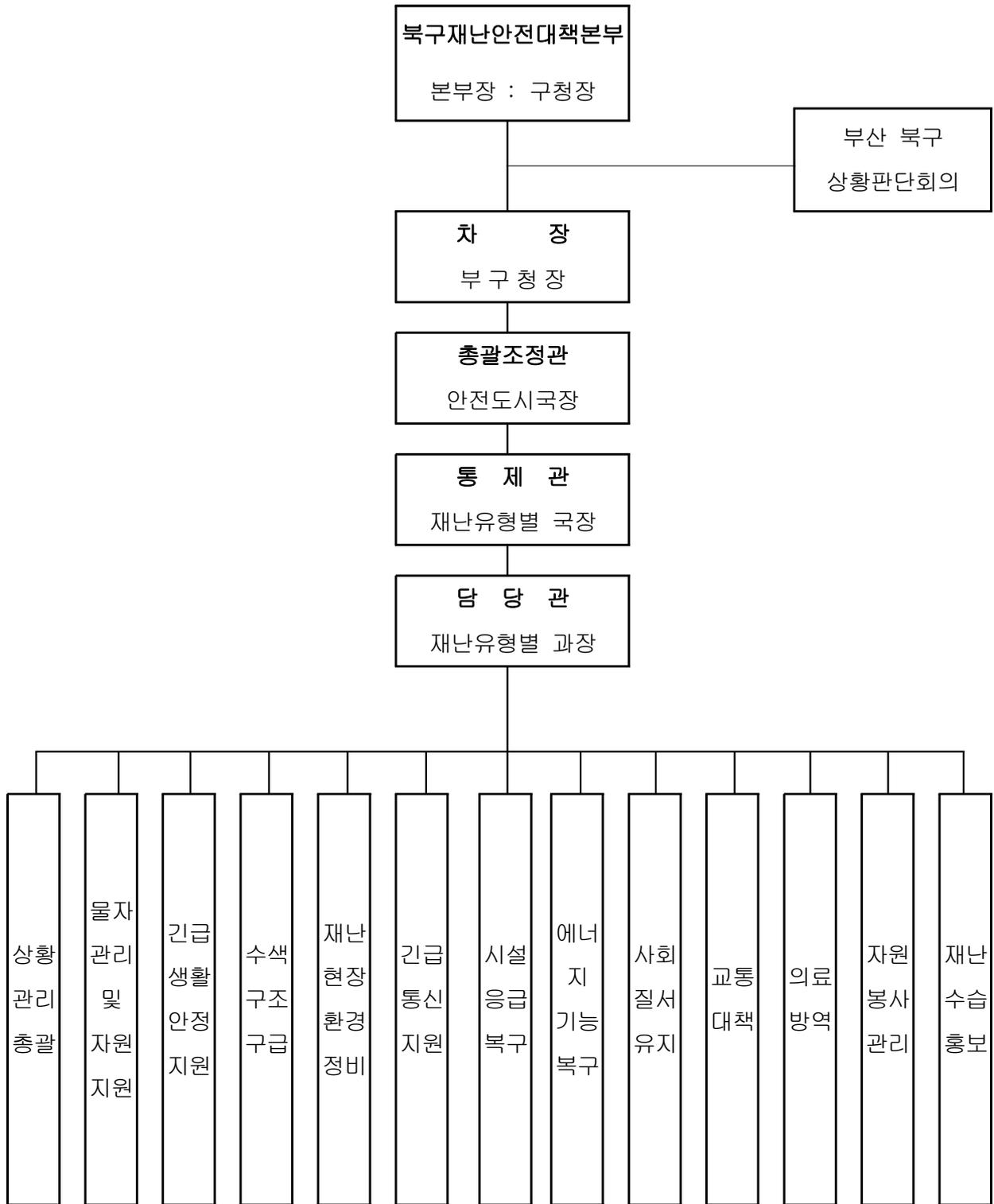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구청 장 • 위 원 : 17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부구청 장 • 위 원: 2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 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 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같은 법 제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부구청 장, 민간전문가 공동 위원장 • 위 원 : 18인 	<p>(구청장의 요청에 아래사항 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주인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 및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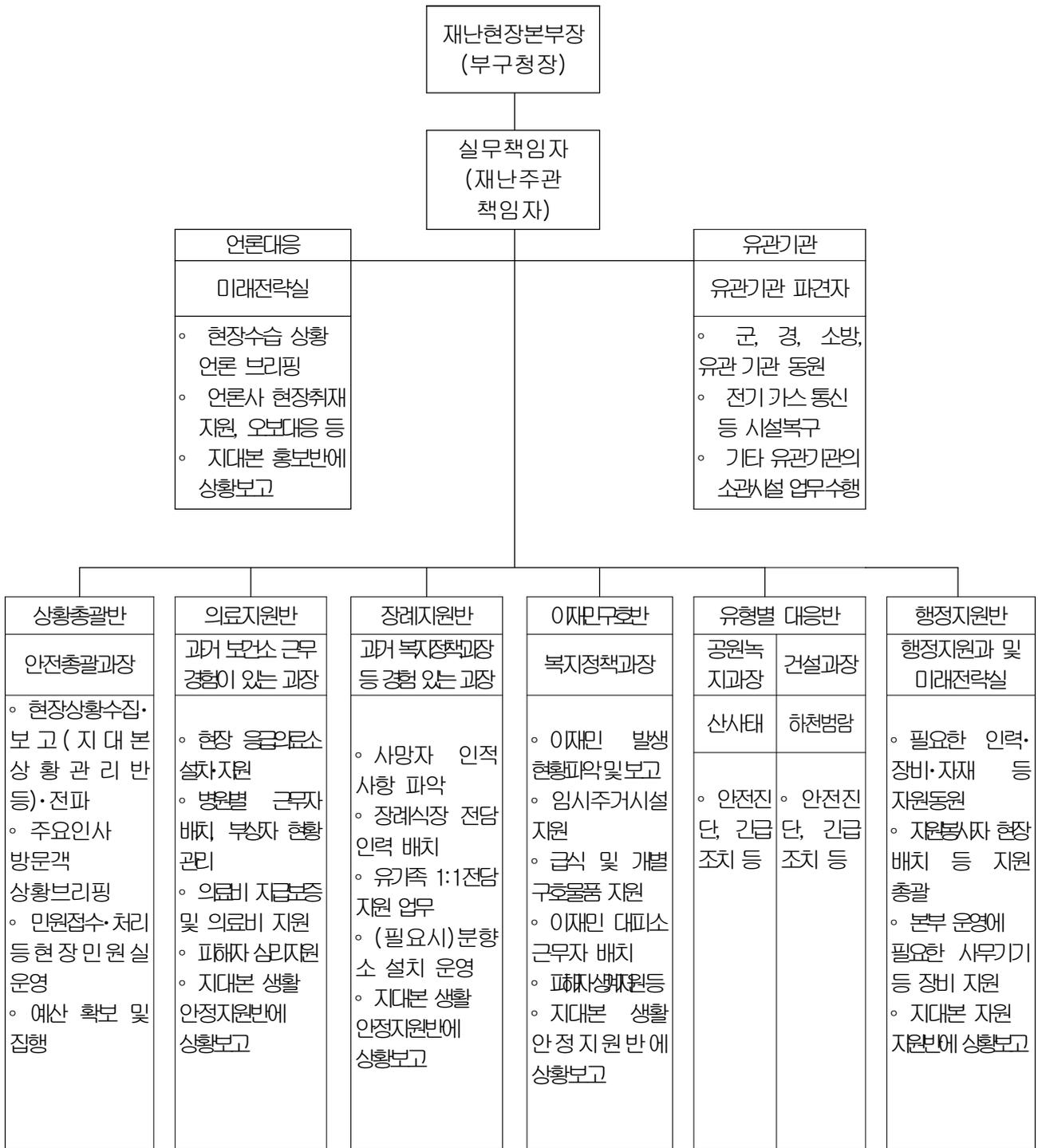
※ 사회재난 시, 담당과장이 담당관을 수행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과)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정책과)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재무과, 통신사)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일자리경제과, 부산도시가스, 한전, 상수도북부사업소)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미래전략실)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총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행정과)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행정지원과)
 - *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활동 관리·지원 등 자원봉사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북부경찰서)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북부소방서)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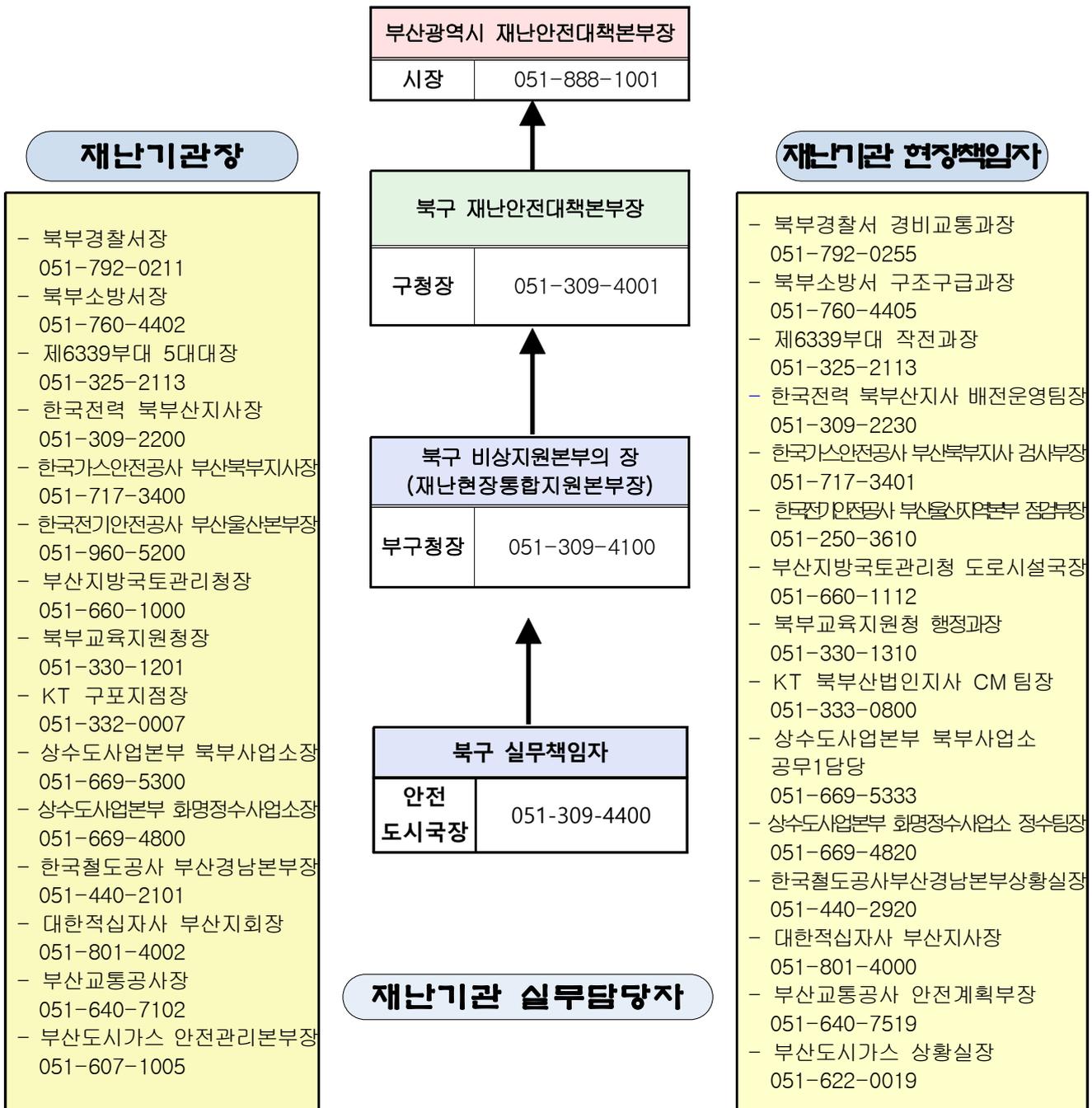
※ 본부장(부단체장, 필요시 단체장) :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 실무반의 반장 및 반원은 24시간씩 3교대 근무원칙

□ 파견 기관·단체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	주요임무
북부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 재난현장의 치안, 질서유지 ◦ 긴급수송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 교통통제 ◦ 재해사망자 발생 시 신원확인 지원 ◦ 의료기관 및 영안실 주변 현장 통제 등
북부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대본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 긴급구조 활동 구역을 위해 통제선 설치 ◦ 부상자 응급조치, 주민고립 및 인명구조 활동
제6339부대 5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긴급동원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북부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수업대책 및 휴교 ◦ 학교시설 긴급점검 및 이재민 수용 ◦ 학교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복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등 사유시설, 공공시설 등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한국전력 북부산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 비상발전 차량 및 임시전력설비 가설 ◦ 필요시 재해지역 주민 안정을 위해 구간 개폐기 차단 ◦ 단전지역 응급복구(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 구내 임시 내전설비 설치 지원) ◦ 가전기기 수리 및 침수가옥 옥내설비 점검·보강 ◦ 감전예방 안내전단 배포 등 전기안전 홍보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부산도시가스 안전관리 4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설비 피해현황 파악 및 이재민 수용시설 비상 가스설비 가설 ◦ 가스누출 점검 및 응급조치 ◦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홍보 ◦ 주택 등 사유시설, 공공시설 등 가스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도로 피해현황 파악 및 점검 ◦ 국도 긴급보수 등
상수도사업소 북부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관련 긴급 응급 복구 ◦ 이재민 구호시설 비상급수시설 지원 등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 국철 등 재난사고시 응급복구 등 대책마련
부산교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화재사고 등 대책 마련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취사차량 활용, 이재민 급식봉사 - 급식대상자가 많거나 장기화 될 경우 인근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와 협의 ◦ 적십자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물품 공급
KT 북부산법인지사 등 통신사업자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지원본부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지휘통신망 지원 ◦ 통신두절지역 현황파악 및 통신 응급소통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책임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북부경찰서 ☎ 051-792-0257	북부소방서 ☎ 051-760-4441	제6339부대 5대대 ☎ 051-325-2113	한국전력 북부산지사 ☎ 051-309-2274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 051-717-3407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960-5222	부산도시가스 상황실 ☎ 051-622-0019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051-660-1290	북부교육지원청 ☎ 051-330-1315	KT 구포지점 ☎ 051-324-5499	상수도사업소 북부사업소 (화명정수사업소) ☎ 051-669-4832 ☎ 051-669-5332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 051-440-2920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 051-801-4023	부산교통공사 ☎ 051-640-7516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05.03.21.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5.03.21.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5.03.21.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	2005.12.19.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05.07.13.	
재난 예·경보 운영규정	재난 예·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05.06.28.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2013.09.2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와 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	2015.11.0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확보 및 주민안전의식 고치를 위한 규정	2015.12.11.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옥외행사(공연, 축제, 체육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6.09.28.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17.06.01.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규정	2020.12.16.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0.11.04.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규정	2021.03.24.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비고
정수장	화명정수장	지방정수장	부산광역시	2007.09.17.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덕천교차로 지구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낙동대로 1739번길 16	기존펌프장 철거 및 설치 등	2016. 04. ~ 2024.12.	33,178	재해예방
북구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북구보건소 일원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 등	2018.01. ~ 2022.07.	4,000	재해예방
구포대진아파트 뒤 재해복구공사	구포동 782-40번지 일원	계단식옹벽 L=68m, 영구앵커 22공, 록볼트 412공 등	2021.04.~ 2022.03.	1,727	재해예방
만덕동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	만덕동 438번지 일원	호안정비, 분기수로 설치, 교량 재가설 등	2022.03. ~ 2023.03.	925	재해예방
대천천 백운교, 애기소 일원 재해복구사업	화명동 2102번지 일원	전석쌓기, 전석깔기, 계단 설치 등	2022.04. ~ 2022.12.	313	재해복구
대천천 준설공사	화명동 2102-25번지 일원	준설 V=2,866m ³	2022.02. ~ 2022.07.	88	재해예방
2022년 북구 관내 하천시설 소파보수공사	북구 관내 일원	하천시설물 정비 1식	2022.02. ~ 2023.01.	70	재해복구
대천천 지구 침수위험지 정비사업	화명동 대천천 일원	유로확장 L = 700m 등	2017.01. ~ 2023.03.	17,127	재해예방
구포동 노후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구포동 1175-106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 L=76m	2021.02.~ 2022.04	190	재해예방
화명동 119안전센터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화명동 119안전센터 일원	하수시설 설치 L=171m 등	2022.03.~ 2022.07.	150	재해예방
화명동 대천리중학교 일원 하수시설 확충공사	화명동 대천리중학교 일원	하수시설 (D300, D500) 설치 L=190m 등	2022.05.~ 2022.08.	122	재해예방
만덕동 호산스포렉스 일원 하수시설확충공사	만덕동 호산스포렉스 일원	배수관 설치 (D350mm) L=194m 등	2022.05.~ 2022.08.	160	재해예방
덕천중학교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덕천중학교 일원	하수관로 (D300~500mm) 정비 L=222m 등	2022.06.~ 2022.08.	200	재해예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하수시설 소파보수공사	관내하수시설	소파보수	2022.02.~ 2022.12.	350	재해예방
금곡대로(금곡역~덕천 역) 일원 침수해소사업	금곡대로 일원	배수관 설치 L=606m, 우수받이 설치 N=88개	2021.12~ 2022.04.	300	재해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북구 관내 일원	노후하수관로정비 L≒4.0km	2021.03.~ 2022.12	2,000	재해예방
2022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북구 관내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D300~1,000) L=5,615m	2022.11.~ 2023.04.	3,250	재해예방
금곡동 1918번지 일원 외 1개소 침수예방사업	금곡동 1918번지 일원	원형수로관 설치 L=48.5m 등	2022.06.~ 2022.08	36	재해예방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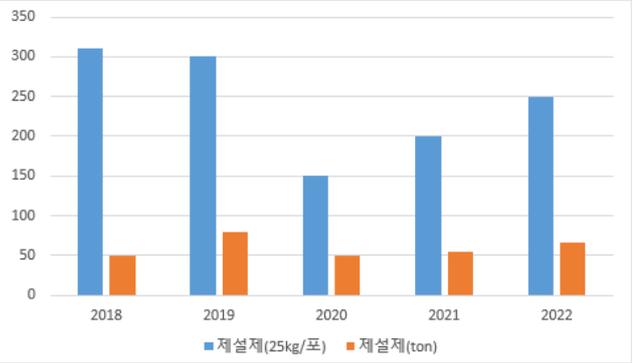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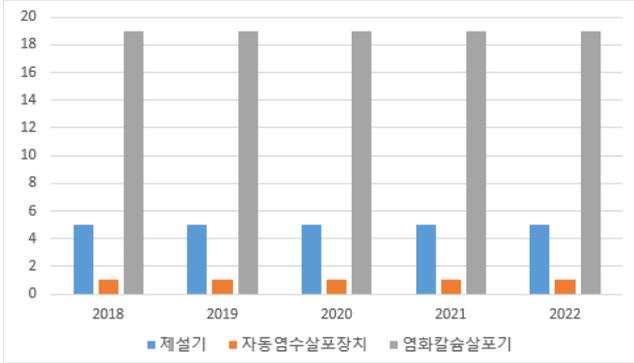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제설기 (대)	자동영수 살포장치 (대)	제설제 살포기 (대)	제설제 (포/25kg)	제설제 (ton)	비고
총계	5	1	19	250	66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

방재물자 종류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설기	5	5	5	5	5
자동영수살포장치	1	1	1	1	1
영화칼슘살포기	19	19	19	19	19
제설제(25kg/포)	310	300	150	200	250
제설제(ton)	50	80	50	55	66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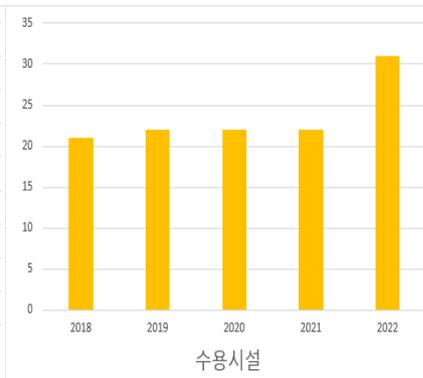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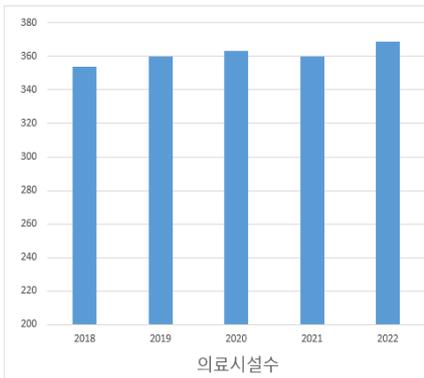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안치실
합계	15	207	948	11	1,547	16
병원 및 종합병원 급 의료기관	11	205	919	9	1,547	0
보건소	2	2	29	2	0	0
기타	2	0	0	0	0	16

[수용시설]

구분	합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민간숙박업소)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31	6,002	22	5,235	0	0	0	0	0	0	9	767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료시설수	354	360	363	360	369	
수용시설	개소	21	22	22	22	31
	수용인원	4,746	6,338	6,020	6,338	6,002



☞ 의료시설수와 수용시설 개소수는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용시설 수용인원은 2년 전 수준으로 감소함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 공작 차	배연 차	구멍 보트	제트 스키	매몰 자탐 지기	구조 용 로프	구멍 자켓	구멍 부환	잠수 세트	유압 장비	절단 장비	에어 백	기타
총계	220	2	1	2	1	1	5	45	43	30	11	15	54	10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기타
총계	59	3	10	0	5	0	0	15	26

※ 기타 : 제설기 5, 살포기 19, 준설차 2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헬기 보유	헬기 임차	산불 진화차	동력 펌프	무전기	진화 장비	기타
총계	2,955	-	1	3	1	45	1,700	1,205

[기타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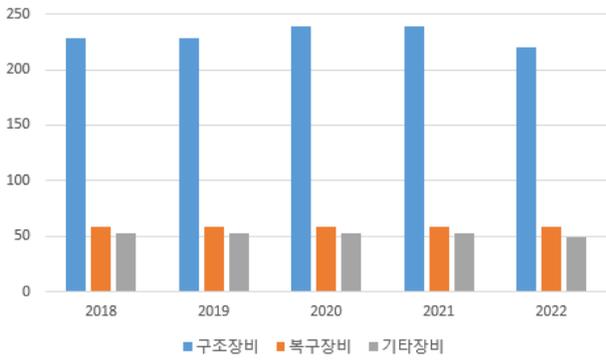
구분	계	용접기	컴퓨터 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비고
총계	49	-	-	45	4	-	-	

◆ 연도별 비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조장비	228	228	239	239	220
복구장비	59	59	59	59	59
기타장비	53	53	53	53	49
산불진화장비	3,430	3,540	3,544	3,741	2,955

☞ 구조, 복구장비는 예년 수준으로 확보 및 보유 중이며, 노후

산불장비는 일부 정비하여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함



다. 인력 지정

[민방위기술지원대]

구분	계	수방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기타
인원	79	3	3	12	16	19	13	1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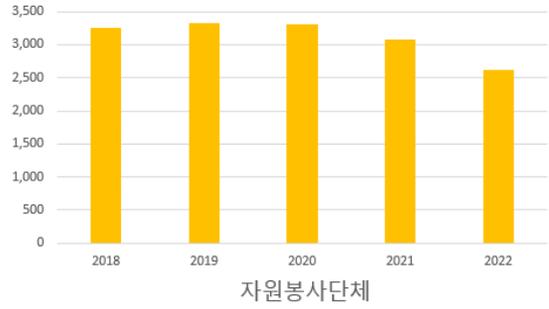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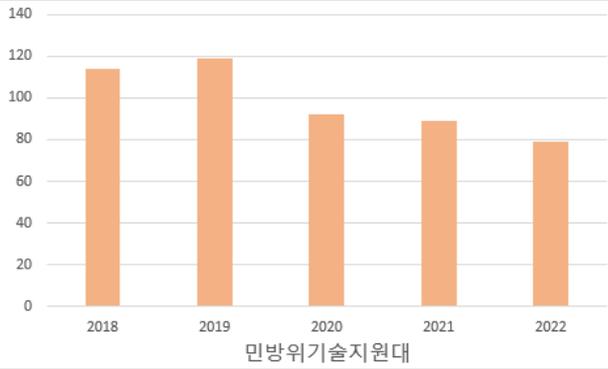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수중 구조대	기타	자율방재단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기타	
인원	2,615	-	-	-	-	266	110	185	315	317	50	252	1,120	

※ 기타 : 바르게살기 358, 자유총연맹 404, 청년회 205, 민족통일 25, 민주평화통일 50, 안전보안관 78

◆ 연도별 비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방위기술지원대	114	119	92	89	79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3,261	3,318	3,310	3,075	2,615



☞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매년 1.10. 기준 편성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10명 감소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가입 인원수는 다소 감소하였음.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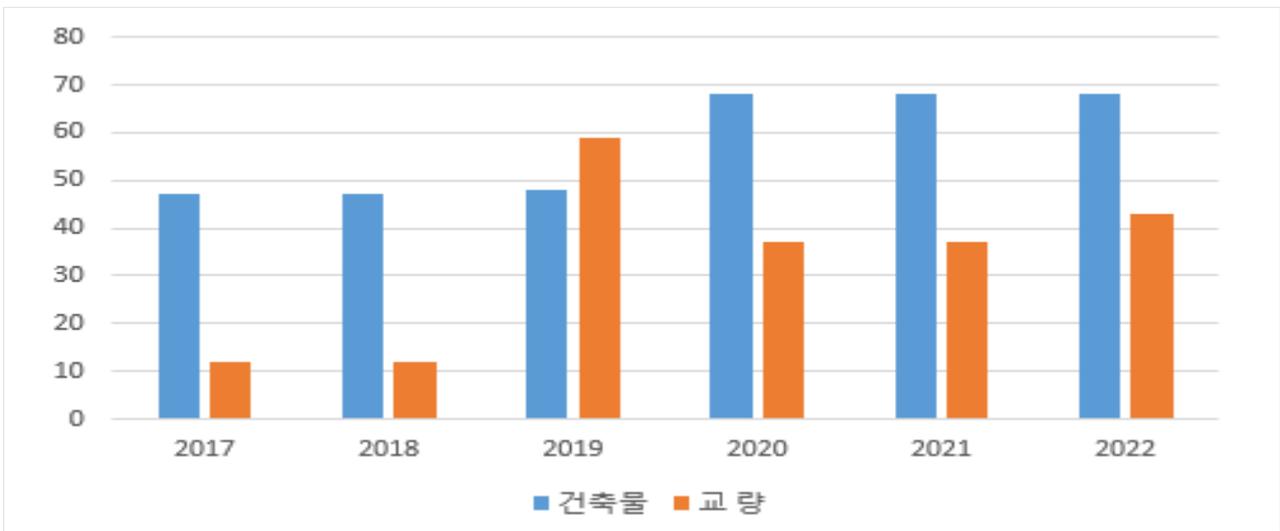
점검·평가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22년 하수시설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2022.11.	부산시	장려	
2022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2022.11.	부산시	우수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안녕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2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건축물	47	32	-	-	68
교 량	35	7	7	810	43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축물	47	47	48	68	68	68
교 량	12	12	59	37	37	43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 해당 사항 없음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법정적립기준	당해 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405백만원	405백만원	405백만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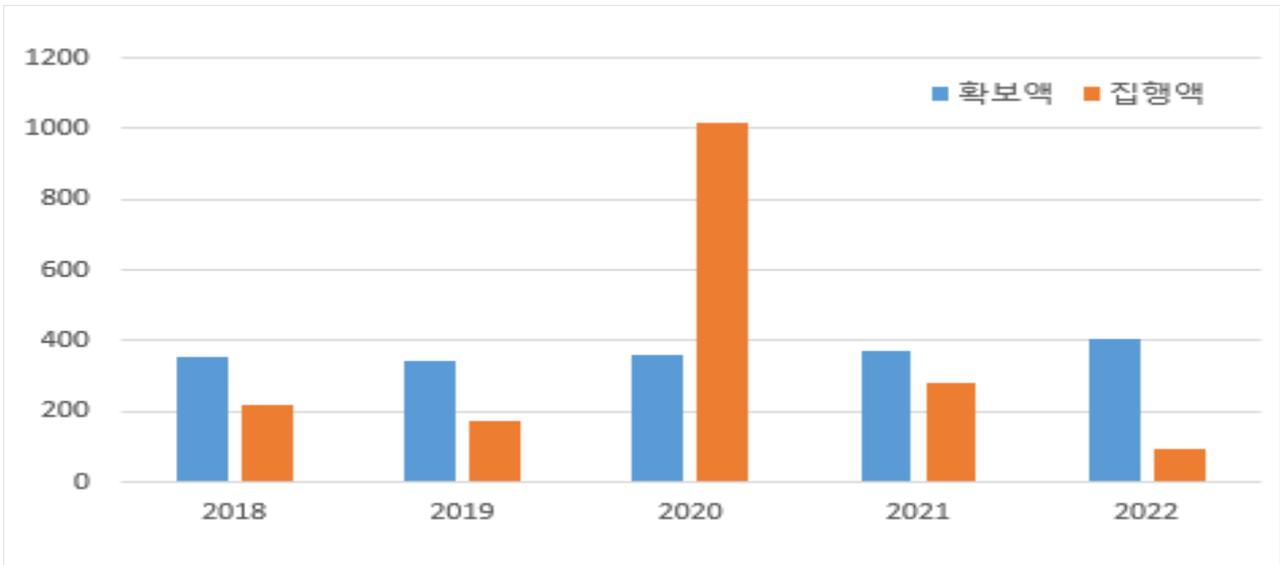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4,338백만원	4,338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확보액(당해연도)		352	344	361	374	405	
사 용 액	합 계	221	172	1,016	279	92	
	공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221	172	1,016	279	92
	민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	-	-	-	-



☞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405백만원으로 법정 적립기준의 100%를 확보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복구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비로 주로 사용하였음. 특히 전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청사 특별방역 실시,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 등 방역활동비 관련 지출 비용이 많았음. 큰 피해를 발생한 자연재해가 없어 사용액은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함.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연번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 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1	풍수해	안전총괄과	2009	태풍, 호우 등 발생 시 대응
2	지진	안전총괄과	2009	지진 발생 시 대응
3	대형화산폭발	안전총괄과	2014	대형 화산 폭발 발생 시 대응
4	가뭄	안전총괄과	2020	가뭄 시 대응
5	산사태	공원녹지과	2019	산사태 발생 시 대응
6	낙뢰	안전총괄과	2019	낙뢰 발생 시 대응
7	한파	안전총괄과	2019	겨울철 한파 발생 시 대응
8	폭염	안전총괄과	2019	여름철 폭염 발생 시 대응

연 번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 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9	산불	공원녹지과	2006	산불 발생 시 대응
10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위생과	2013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인하여 위기 발생 시 대응
11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위생과	2013	유류, 유독물 등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 시 대응
12	도시철도(지하철) 대형사고	교통행정과	2014	도시철도에 충돌,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13	고속철도 대형사고	교통행정과	2014	고속철도에 충돌,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14	해양선박사고	일자리경제과	2014	어선 사고 발생 시 대응
15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일자리경제과	2018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대응
16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 축 과	2014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건물 붕괴 시 대응
17	가축질병	일자리경제과	2014	구제역 등이 발생 시 대응
18	감염병	보건행정과	2006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19	정보통신	재 무 과	2014	주요방송통신사업의 국가기반시설 피해시 대응
20	전력분야	일자리경제과	2014	전력공급 장애 시 대응
21	보건의료사고	보건행정과	2006	의약품 공급중단, 혈액수급 부족시 대응
22	육상화물운송분야	교통행정과	2014	육상화물운송자의 운송거부 시 대응
23	초미세먼지	환경위생과	2020	초미세먼지 등 발생 시 대응
24	도로터널사고	건 설 과	2014	도로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시 대응
25	항공기사고	교통행정과	2014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대응
26	가스분야	일자리경제과	2014	도시가스 공급분야 위기 발생 시 대응
27	목조문화재 화재	문화체육과	2018	문화재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28	사업용 자동차 대형사고	교통행정과	2014	사업용 차량의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대응
29	요양병원화재	보건행정과	2018	요양병원 화재 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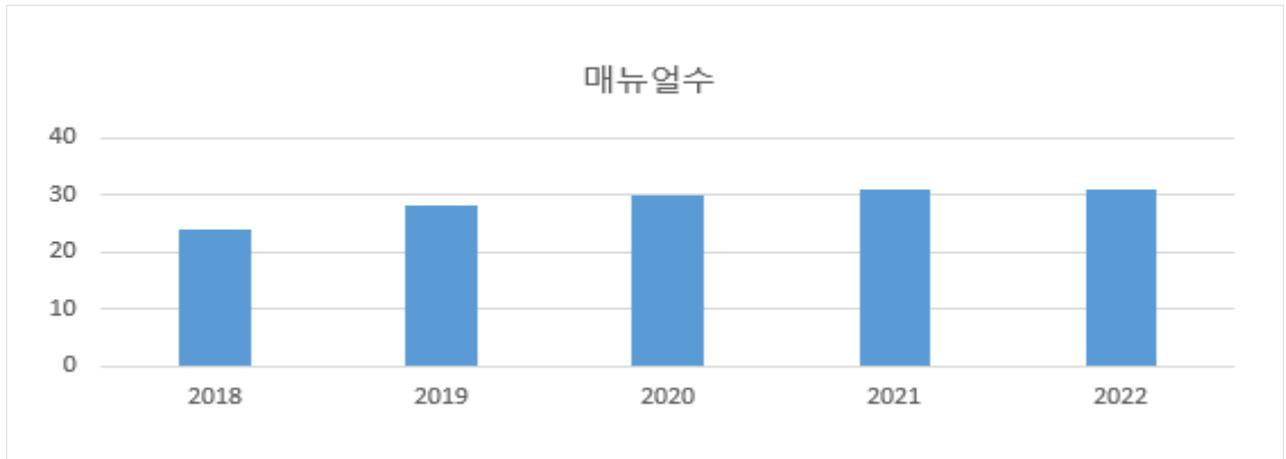
연 번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 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30	전통시장화재	일자리경제과	2021	전통시장 화재 시 대응
31	지반침하	도시관리과	2018	도로 지반침하 등 발생 시 대응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1개)	2022.04.	법령개정, 조직개편, 기관별 인사 이동, 재난 사고 발생 후 관련 매뉴얼 개선 등 반영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1개)	2022.11.	법령개정, 조직개편, 기관별 인사이동 등 반영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뉴얼 수	24	28	30	31	31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등급]

구 분	재해위험 요인	예방대책 추진	예방시설 정비	안전도 지수	등 급	변동
진단결과	0.40	0.72	0.61	0.65	C	▲ 1등급

◆ 연도별 등급 비교 ※ 2020년부터 기존 10급제에서 5등급제(A~D)로 변경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등 급	2	미 실시	D	미 실시	C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지정면적 (㎡)	유형	등 급	
덕천교차로 일원 침수위험지구	낙동대로 1739번길 16 덕천배수펌프장 일원	75,707	침수	나	덕천천 지방하천 배수위 및 배수펌프 배수능력 부족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으로 침수피해 발생
화명동 대천천 침수위험지구	북구 화명동 대천천 일원	42,353	침수	나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인근 주택 및 도로 침수피해 발생
화명동 보건소 옆 침수위험지구	북구 화명동 1531-4번 지 일원	23,000	침수	나	집중 호우시 인근주택 및 도로 침수 피해 발생
화명동양달마을 침수위험지구	화명동 272-8번지 일원	14,000	침수	나	집중 호우시 인근 주택 및 도로 침수

♣ 공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 안전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주현, 전화 : 051-309-4642)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입법취지

우리 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안 제1조 ~ 제4조)
- 나. 위원회의 설치요건, 사전협의,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제7조)
- 다.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안 제8조 ~ 제10조)
- 라. 위원회의 운영, 존속기한, 위원회의 통합·폐지(안 제11조 ~ 제13조)
- 마. 수당 및 여비(안 제14조)
- 바.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및 적용례, 다른 자치법규·행정규칙과의 관계(안 부칙)
- 사. 수당의 지급기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46504)
- 2) 연락처 : ☎ 051-309-4015, FAX) 051-309-4019 E-mail : wndus8267@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북구소식 → 입법예고)

-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미리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고, 동일 위원회 내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단체 등이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의뢰를 받은 위원이 사전 자료수집·안건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원격지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복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을 신규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임기의 기산일은 기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다른 자치법규·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복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복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수당의 지급기준 (제14조 관련)

1. 참석수당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출석 회의	1일(2시간)	·기본료 : 100,000원 ·초과료 : 50,000원	· 초과료는 2시간 초과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화상 회의	1회(2시간)	·기본료 : 50,000원 ·초과료 : 20,000원	

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부산광역시복구공고제2023-299호

부산광역시 복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복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부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부산광역시 복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인 군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
- 나.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소재지를 위원 구성의 기준으로 하는 조항을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관할구역으로 변경
- 다. 복구청 내부 위원 지정 조항을 변경하여 재난관련 계획 및 예산 등의 사전검토 효율성 추진

2. 주요내용

- 가. 제3조제1항제3호의 “육군 제6339부대6대대장”을 “북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 지역사령관”으로 개정.
- 나.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북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을 각각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으로 개정
- 다. 제3조제1항제7호의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개정
- 라. 제5조제1항 본문 중 “직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개정
- 마. 제7조제5항 본문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복구청장(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복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복구청(안전총괄과)
- 연락처 : 전화 051-309-4642, FAX 051-309-464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방문 등

- 붙임 1. 부산광역시 복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복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복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육군 제6339부대6대대장”을 “복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 지역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복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을 각각 “복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

제5조제1항 중 “직무를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p>1. 2. (생 략)</p> <p>3. <u>육군 제6339부대6대대장</u></p> <p>4. <u>북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u></p> <p>5. <u>북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u></p> <p>6. (생 략)</p> <p>7. <u>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u></p> <p>② (생 략)</p>	<p>제3조(구성)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북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 지역사령관</u></p> <p>4. <u>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u> -----</p> <p>5. <u>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u> ----- --</p> <p>6. (현행과 같음)</p> <p>7. <u>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u>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④ (생 략)</p> <p>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p>	<p>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팀장이</u> ----.</p>

[붙임 2]

부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복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